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11929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

담당변호사 조광형

피고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우

담당변호사 박소정

변론 종결 2024. 11. 12.

판결 선고 2024. 11. 26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12. 2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. 12. 29. 접수

제1115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

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, C와 그 자녀인 피고 사이에 2015. 12. 28.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소는 위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

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(민법 제406조 제2항).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.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15. 12. 28. 체결되었고,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4. 3. 28.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,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(원고는 2024. 3. 21.경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상,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).

2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손화정

별지